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02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 관	2
2. 특별사면 등 대상자의 제한	3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민회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4. 11. 8.
3. 회 부 일 : 2024.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안 제9조).

III. 검토의견

1. 개 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된 사람, 특정한 죄를 범한 사람, 자신의 배우자 또는 친족을 특별사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u><단서 신설></u>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u><신 설></u>	1.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파면 결정을 선고받은 자
<u><신 설></u>	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u><신 설></u>	3.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

<신 설>

간 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
인륜적 범죄 또는 반인도주
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

<신 설>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자

<신 설>

5.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
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
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

<신 설>

6. 「형법」 제297조, 제297조
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
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의 죄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및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의 죄를 저지른 자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신 설>

제5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자

8.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
내의 친족

나. 현행법상 사면 등의 유형과 절차

1) 사면 등의 의미와 유형

- 넓은 의미에서 사면(赦免)이란, 국가원수의 행위로서 형(刑)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사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어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 이해되며, 좁은 의미의 사면(이하 ‘사면’), 감형, 복권 등을 포괄함.
- 「大韓民國憲法」(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고(헌법 제79조), 「사면법」은 사면, 감형 및 복권의 요건과 효과를 구체화하고 있음.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 복권 및 감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형의 경감을 의미하는 감형, 상실·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의미하는 복권은 모두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나, 사면의 경우 반드시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지 않음(제3조).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또한, 사면, 감형 및 복권은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일반(一般)에 대한 것과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를 ‘일반사면’ 등으로, 후자를 ‘특별사면’ 등으로 표현함(제2조 등).¹⁾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1) 현행법은 특별감형·복권을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등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제9조 등), 특별감형, 특별복권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특별감형, 특별복권으로 표현함.

2) 사면 등의 유형별 절차

- 일반 사면·감형·복권의 경우 죄나 형의 종류를 정하여 실시되므로, 일정한 죄 또는 형에만 해당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사면·감형·복권의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특별 사면·감형·복권보다 절차적 요건이 강화되어 있음.
- 사면의 경우 일반사면은 ‘특정한 범죄’를 기준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 일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제8조). 반면에,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제9조).

효과에 있어서도 일반사면의 경우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국가의 공소권이 상실되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특별사면의 경우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공소권 상실의 문제는 없고 원칙적으로 형 면제, 예외적으로 형 선고 효력 상실의 효과가 있음(제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사면의 유형별 비교 >

구 분	대상자	절차·형식	효 과
일반사면	죄를 범한 사람	국회 동의 - 대통령령	· 공소권 상실 · 형 선고 효력 상실
특별사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명	· 형 집행 면제 · 형 선고 효력 상실

- 감형과 복권의 경우에도 일반에 대한 것과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고, 이를 기준으로 절차, 형식 등에 차이가 발생함.

일반 감형·복권의 형식은 일반사면처럼 대통령령으로 하고,²⁾ 특별 감형·복권의 절차와 형식은 특별사면의 경우와 같음. 감형의 효과는 형의 변경·집행 경감이고, 복권의 효과는 상실·정지된 자격의 회복임(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2) 다만, 대상자 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나, 일반감형·복권은 죄의 종류를 정하는 방식 외에 형의 종류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 감형·복권의 유형별 비교 >

구 분	대상자	절차·형식	효 과
일반감형	형을 선고받은 사람	대통령령	· 형의 변경
특별감형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명	· 형 집행 경감 · 형의 변경
일반복권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대통령령	· 자격 회복
특별복권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명	· 자격 회복

- 다만, 사면·감형·복권 등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등의 효과는
장래적인 것에 그치고, 형 선고 등에 따라 이미 발생한 기성(既成)의
효과까지 변경하게 되는 것은 아님(제5조제2항).³⁾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既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이유에서 법원은 일반사면된 경우에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그 각 호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그 각 호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제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취지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다. 사면 등 실시 현황 및 개선논의

1) 사면 등 실시 현황

- 사면 등의 실시 현황을 살펴 보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 사면은 1995년을 끝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특별사면 등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실시되고 있음.

일반사면은 1995년까지 총 7회, 일반감형은 1952년까지 총 3회, 일반복권은 1980년까지 총 5회 실시되었음.

< 일반 사면·감형·복권 실시 내역 >

구 분	실시 연도	실시 횟수
일반사면	1948년, 1961년, 1962년, 1963년(2회), 1981년, 1995년	총 7회
일반감형	1948년, 1950년, 1952년	총 3회
일반복권	1948년, 1962년, 1963년, 1978년, 1980년	총 5회

특별사면은 2000년대 이후로도 2001년, 2011년, 2018년 3개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되었고, 특별 감형과 복권도 꾸준히 실시되고 있음.

-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특별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자는 특별사면 12만 5,407명, 특별감형 4,687명, 특별복권 1만 1,608명 등 총 14만 1,702명임.

< 특별 사면·감형·복권 실시 내역(2000-2024) >

(단위: 명)

연도	사면	감형	복권	계	연도	사면	감형	복권	계
2000	27,029	810	525	28,364	2013	34	3	18	55
2001	0	0	0	0	2014	5,812	113	0	5,925
2002	93	4	25	122	2015	6,280	246	1	6,527
2003	24,772	675	602	26,049	2016	4,612	261	3	4,876
2004	63	0	6	69	2017	6,182	245	17	6,444
2005	12,068	567	1,489	14,124	2018	0	0	0	0
2006	96	19	27	142	2019	6,908	396	2,248	9,552
2007	146	12	276	434	2020	2,863	153	8	3,024
2008	10,360	223	1,969	12,552	2021	2,594	131	369	3,094
2009	9,093	375	0	9,468	2022	1,628	89	1,351	3,068
2010	72	15	2,406	2,493	2023	2,064	82	30	2,176
2011	0	0	0	0	2024	2,043	83	73	2,199
2012	595	185	165	945	누계	125,407	4,687	11,608	141,702

주: 노란 음영은 특별사면·감형·복권 중 어느 것도 실시되지 않은 해

2) 개선논의

○ 2000년 이후 사면·감형·복권이 없었던 해는 3년뿐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면·감형·복권된 사람의 누계가 14만 1,702명에 이르는 만큼, 사면·감형·복권이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사면 등은 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전면적·부분적인 변경을 야기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또한, 1995년을 마지막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감형·복권은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특별사면·감형·복권만 실시되고 있어 사면의 실시 여부가 정부의 의지에 맡겨져 있다는 점, 실시 기준과 대상자 등 사면의 내용에 관한 통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도 상당함.

○ 이에 특별사면 등의 절차를 엄격화하고,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그 절차와 내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동 법률안 역시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특별 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면권의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

-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u><단서 신설></u> |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u><신설></u> | 1.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파면 결정을 선고받은 자 |
| <u><신설></u> | 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
| <u><신설></u> | 3.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인륜적 범죄 또는 반인도주
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자

5.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
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
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

6. 「형법」 제297조, 제297조
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
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의 죄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
조까지의 죄 및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의 죄를 저지른 자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자

<u><신 설></u>	<u>8.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 내의 친족</u>
--------------------	-------------------------------------

- 안 제9조는 특별 사면·감형·복권만을 제한하고 있고, 나아가 특별 사면 등이 제한되는 사람(사면 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도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특별사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특별사면 등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일정한 범위에서 그 실시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안 제9조에 따른 사면 제한 대상자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탄핵결정	제1호	탄핵심판 파면결정(탄핵결정)
주요 범죄	제2호	헌정질서 파괴범죄
	제3호	반인륜·반인도 범죄
	제4호	뇌물범죄(「형법」 등)
	제5호	집단살해죄
	제6호	성범죄(「형법」 등)
	제7호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대통령의 친족	제8호	배우자, 4촌 내 친족

- 안 제9조제1호에 따른 사면 제한 대상자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탄핵심판의 파면결정(탄핵결정)을 받은 사람임.

탄핵심판의 파면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탄핵 대상으로 삼은 고위공직자로서, 국회의원 재직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따른 탄핵소추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헌법 제65조), 헌법 재판소에 의해 탄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바,⁴⁾ 개정안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사람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만 사면 등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안 제9조제1호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사면은 형사처벌 내지 공적 징계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인데 (제4조), 헌법에서 규정한 탄핵은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가 아니고 탄핵에 대한 사면을 허용하는 경우 탄핵제도가 무용하게 되므로, 탄핵결정 자체는 사면할 수 없다는 것이 해석이 가능함.⁵⁾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배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이 규정한 탄핵사유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이다.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

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 701.

- 입법례에 따라서는 탄핵결정 자체는 사면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경우도 있음.⁶⁾

반면, 탄핵결정의 계기가 된 사실관계에 따른 형사책임 등에 대한 사면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탄핵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탄핵결정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두 존재함.

따라서 안 제9조제1호가 “과면결정을 선고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탄핵결정 그 자체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로 추궁할 수 있는 형사책임 등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나아가 후자의 경우라면 “과면결정을 선고받은 자”라는 표현만으로 형사책임 등에 대한 사면도 배제할 수 있겠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미국 연방헌법 제2조제2항은 “대통령은 연방 법률 위반에 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 연기와 사면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The President ... he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 안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면 제한 대상자는 일정한 중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 등은 대상자의 사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생 안정과 사회 갈등의 해소 등에 활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의도적으로 중죄를 범한 사람도 특별사면 등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사회의 규범의식을 저하시키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를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안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죄는 그 대상이 광범하고 성격도 상이하여 법정형 등 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별사면 등의 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형법」 제132조에 따른 알선수뢰죄(안 제9조제4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법정형인 반면, 협약상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단살해죄(안 제9조제5호)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임.

또한, 안 제9조제3항의 죄는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등 반인륜적·반인도주의적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죄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9조제8호의 사면 제한 대상자는 특별 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하는 대통령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임.

대통령의 배우자나 일정한 범위의 혈족·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면 등의 실시는 그 대상과 대통령 간의 사적인 관계로 인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필요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일정한 인적 관계 등을 기준으로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경우 역차별 등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안 제9조제8호는 배우자 외에 사면 등을 제한할 대상으로 4촌 내 친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혈족 및 인척에 대한 사면이 제한되는 기준으로 4촌이 적절한 수준인지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9조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헌법에서는 일반사면에 대하여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는 점, 사면이 제한되는 범죄와 사면이 제한되지 않는 범죄를 달리 차별 취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 친족 관계는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므로 차별 취급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